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정 1972. 3. 9 대통령령 제 6106호
제 1 차 개정 1974. 7.29 대통령령 제 7214호
제 2 차 개정 1977.10. 6 대통령령 제 8717호
제 3 차 개정 1978. 4.19 대통령령 제 8957호
제 4 차 개정 1979. 2.10 대통령령 제 9319호
제 5 차 개정 1980. 3.31 대통령령 제 9827호
제 6 차 개정 1981. 2.28 대통령령 제10216호
제 7 차 개정 1982. 2.15 대통령령 제10727호
제 8 차 개정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4호
제 9 차 개정 1984. 5. 7 대통령령 제11421호
제10차 개정 1986. 6.26 대통령령 제11935호
제11차 개정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8호
제12차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제13차 개정 1992. 3. 6 대통령령 제13607호
제14차 개정 1993. 2.24 대통령령 제13680호
제15차 개정 1995.12.14 대통령령 제14832호
제16차 개정 1997. 8.13 대통령령 제15462호
제17차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74호
제18차 개정 1998. 2.24 대통령령 제15665호
제19차 전문개정 2001. 3. 2 대통령령 제17146호
제20차 개정 2005. 2.28 대통령령 제1872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둔다.

제3조(소재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4조(공무원의 정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의 장) ①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제6조(단과대학 등) ①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별표 1의 범위 안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조(부속시설 등) ①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부속시설에 장을 각각 두되, 부속시설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④총장은 부속시설중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과 부속시설(공

통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과 3개의 범위 안에서 처 및 실을 두되,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사무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처장 및 실장의 분장 사무는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부속시설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처 및 실에 11개의 범위(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안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과장 및 담당관은 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2개의 범위 안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월정직책급 지급 등)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하는 경우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학교) ①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협력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학교는 교육시설의 이용, 교직원의 활용 기타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학교의 지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당해 직장에 재직 중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강의수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에 출강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의 설치
2. 부속시설의 설치
3. 하부조직(부속시설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총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2001. 3. 2. 대통령령 제1714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8조(사무국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8. 대통령령 제18720호)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범위(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단과대학	특수대학원
설치범위	4	1

〔별표 2〕

사무국장의 분장사무(제8조제2항 관련)

명 칭	분 장 사 무
사무국장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